

미국의 다양성 영화에 대한

공적 지원 정책 및 사업 조사



## 미국의 다양성 영화에 대한 공적 지원 정책 및 사업 조사

영화진흥위원회 미국 통신원 김수연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년 11월 9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http://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 Contents

---

01

들어가는 글 / 1

---

02

연방정부의 인디영화 지원정책 / 2

---

03

뉴욕주의 인디영화 지원정책 / 6

---

04

캘리포니아주의 인디영화 지원정책 / 9

---

05

나오는 말 / 12

---

## 1. 들어가는 글

미국에서는 영화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의 연방정부조직은 없으나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 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PCAH), 국가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국가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등이 연방기구로서 문화 및 예술, 인문분야 전반에 지원과 펀딩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들은 주지사 직속으로 영화사무소(Film office)나 영화위원회(Film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이들 기구에서는 해당 주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영화나 TV 프로덕션을 유치하고 각 주에서 쓴 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MPAA에 따르면 <피치퍼펙트> 1편과 2편이 모두 합쳐 4천만달러에 달하는 제작비를 루이지애나주에서 썼고 이를 촬영 팀이 결제한 호텔숙박일수만 7천일에 달했다.<sup>1</sup> 이렇듯 경기진작효과가 큰 제작부문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지는 한편, 상대적으로 배급이나 상영부문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은 적은 편이다.

여기서 예술영화, 독립영화로 통칭되는 '다양성 영화', 즉 미국의 인디영화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인디영화는 상업영화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IFTA의 넓은 의미의 정의에 따르면, 스튜디오 시스템 밖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인디영화로 통칭된다.<sup>2</sup> 뉴욕주에서는 인디영화를 1500만달러 이하의 제작비를 들이고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에서 제작한 영화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장회사 지분율이 25% 이하인 제작사가 만든 영화로 규정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주정부의 영화산업 지원정책을 인디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각기 다른 주정부별 지원책을 모두 다룰 수 없는 관계로 여기서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조사, 기술하였다.

<sup>1</sup> America's Film & TV Industry is a Network of small businesses, Sam Newton, MPAA Policy Focus, 2016년 5월 6일 (<http://www.mpaa.org/americas-film-tv-industry-is-a-network-of-small-businesses/#.WB39ovorI2w>)

<sup>2</sup> 자세히는 할리우드 6개 메이저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서 51% 이상 자금을 조달받아 제작된 영화가 인디영화라는 것이다. 메이저 스튜디오가 배급을 했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IFTA의 정의에 부합하는 인디영화가 된다. 이는 다소 넓은 의미의 정의로 이 기준에 따르면 <엘리시움>이나 <헝거게임> 등도 인디영화에 해당한다. 출처 : FAQs, What is an Independent?, IFTA 홈페이지 ([http://www.ifta-online.org/sites/default/files/FAQs\\_updated+Sep2013.pdf](http://www.ifta-online.org/sites/default/files/FAQs_updated+Sep2013.pdf))

## 2. 연방정부의 인디영화 지원정책

### 1)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 위원회(PCAه)의 Film Forward 프로그램

PCAه는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이 창설한 위원회로 문화예술 관련 백악관 자문기관이다. 이들은 3개의 문화관련 연방기구인 국가예술기금(NEA), 국가인문기금(NEH), 박물관 및 도서관 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일하고 있다.<sup>3</sup>

PCAه의 주요 업무는 교육, 문화교류, 관광의 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중 문화교류의 한 카테고리로서 운영하는 Film Forward 프로그램은, 미국과 해외의 뛰어난 영화제작자들을 초청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sup>4</sup> PCAه와 NEA, 그리고 박물관 및 도서관 기구의 지원을 받아 선댄스 인스티튜트에서 개최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대 독립영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10명의 감독들(미국 및 해외 감독)을 초청하여 미국 및 해당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작품을 공개하고 마스터클래스와 토론회, 질의응답 등을 통해 영화제작자들과 관객들이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sup>5</sup> 2016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10편의 작품들이 쿠바와 영국, 미국 등을 순회하며 관객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작품에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A Borrowed Identity>, 뛰어난 뮤지션이었으나 알콜중독으로 사망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Amy> 등이 있었다.

### 2) 국가예술기금(NEA)의 미디어아트 지원

NEA는 1965년 의회에서 설립한 독립된 연방기구로 문화예술분야에 펀딩과 지원을 제공하여 자국민들이 예술분야에 참여하고, 상상을 실현하며, 독창적인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주요한 목표다. 이들은 클래식음악, 오페라, 연극, 뮤지컬, 박물관, 비주얼아트, 미디어아트, 예술교육, 민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금(Grants)을 제공하고 있다.<sup>6</sup>

이 중, 미디어아트 분야에서는 영화, TV, 라디오, 오디오, 영상물, 인터넷, 인터랙티브 및 모바일 기술, 비디오게임과 미디어통합 스토리텔링, 미디어 관련 출판물, 카탈로그나 저널 등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NEA가 출범한 이후 1966년-2015년 사이 미디어아트에 지원한 금액은 3억 3720만달러에 달했다. 이들의 지난 10년간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성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NEA의 지난 10년간 미디어아트 지원정책 및 성과

구분	지난 10년간 지원금	상세내용
----	-------------	------

<sup>3</sup> ABOUT US, PCAه 홈페이지 (<http://www.pcah.gov/about-us>)

<sup>4</sup> Cultural Exchange>Film Forward, PCAه 홈페이지 (<http://www.pcah.gov/film-forward>)

<sup>5</sup> About>Program Overview, Sundance Film Forward 홈페이지 (<http://www2.sundance.org/filmforward/about/>)

<sup>6</sup> About the NEA, NEA 홈페이지 (<https://www.arts.gov/about-nea>)

미디어아트 개발 및 네트워킹 지원	357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킹지원: 라티노 미디어 마켓(LA) 지원, IPP의 인디펜던트 필름 워크 지원(뉴욕)</li> <li>제작/후반작업 워크샵 및 프로그램 지원 :필라델피아 Scribe Video Center 및 뉴욕주 버팔로의 Squeaky Wheel Access 프로그램 지원</li> <li>연출/제작 등 각종 랩 지원: LA의 필름인디펜던트,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의 인디 라디오 연합(Association of Independents in Radio) 등</li> </ul>
각종 제작물 창작지원	99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미디어, 게임, 온라인 프로젝트 지원: Art Works 지원대상 확대, Games for Change Arcade나 Jacob's Pillow Dance Interactive 등 지원</li> <li>선댄스 랩 지원: 1981년 런칭, 영화제작/작가/감독/프로듀서 워크샵 제공</li> <li>영화단체들의 제작 및 후반작업 비용 지원: 매사추세츠주 Walpole의 Center for Independent Documentary, 뉴욕시 Women Make Movies, 시카고 Kartemquin Education Films 등</li> <li>NEA의 제작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들은 다수가 Peabody 상을 수상</li> </ul>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지원	278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BS의 TV 시리즈물(아메리칸 마스터스)이나 프로그램(Live from Lincoln Center, POV) 등 런칭 및 편성</li> <li>공영 라디오 방송국의 각종 프로그램 지원</li> </ul>
영화제 및 상영회 지원	63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상영회 지원:켄터키주 Whitesburg, 텍사스주 Houston,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등</li> <li>각종 장르(단편,다큐멘터리등)의 영화제 지원 및 라틴/유태인/인디언 영화제 등 지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ional Film Preservation Foundation 및 기타 12개 영화 아카이브들과 함께 영화보존프로그램 참여, 공공도서관에 독립영화들을 수집, 보관, 상영 및 배급하는 역할</li> <li>뉴욕주 로체스터의 조지 이스트먼 하우스 보존프로그램 지원</li> <li>공영TV 및 라디오 지원, 영화보존 이니셔티브 지원: 공연예술작품의 TV방영 지원, AFI설립, 영화보존 위한 지원금 제공 (40여개 단체 1270만 달러)</li> </ul>

자료출처: 「Media Arts Fact Sheet」, 『Media Arts』, NEA 홈페이지 (<https://www.arts.gov/artistic-fields/media-arts>)

NEA의 홈페이지에는 현재 운영중인 2016년 지원금들의 신청, 심사, 발표 등의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 2016년 봄과 여름에 지원접수를 마치고 11월 현재는 수상자를 심사

하고 있거나 발표하는 시기다. 각 분야별로 지원대상과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지원은 Grants.gov를 통해 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에 대한 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아래 표 2와 같다. 단 이 지원금은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주어진다. 지원금 수령자격이 주어지는 곳은 비영리 단체나 주/지방 정부 혹은 연방정부가 공인한 토착민 커뮤니티 등이다.

[표 2] NEA의 현행 미디어아트 지원금 규모 및 대상

구분	지원금 규모	대상 및 내용
ART WORKS	1만달러-1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개발, 제작, 배급 및 방영 등을 지원</li> <li>·1차 대상 : 일반에 공개되는 영화/영상/오디오/멀티미디어 페스티벌, 각종 미디어아트의 전시 및 투어프로그램, 지역/전국/해외 규모의 미디어 배급, 미디어아트 작품의 복원, 유지 및 보관, 커뮤니티의 공공기관에서 개최되는 미디어아트 전시와 페스티벌 등</li> <li>·2차 대상 : 리서치, 개발, 제작, 완성비용 등 미디어아트 제작의 전과정에서 지원 가능. 미디어아티스트/기관이 필요한 리소스를 습득하는 활동과 제작/후반작업 설비 이용, 미디어아트 관련 디지털 및 인쇄물로 된 출판, 웹포털/허브/태블릿앱의 개발 혹은 미디어아트작품과 관객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기술의 이용이나 새로운 모델, 미디어 아티스트/평론가/학자 들 대상 워크샵이나 컨퍼런스, 각종 교육활동 등에도 지원</li> </ul>
Creativity Connect	2만달러-1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예술관련 기관과 다른 분야(교육,환경,기술등등)의 협력 지원</li> <li>·대상 : 예술부문과 타부문의 협력으로 만든 프로젝트, 타부문의 예술을 이용한 프로젝트, 사회의 이슈를 창의적으로 예술을 이용하여 표현한 프로젝트 등</li> </ul>
Challenge America	1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소외계층에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li> <li>·대상 : 지리적,인종적,경제적,신체적으로 문화향유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프로젝트</li> </ul>
Our Town	2만5천달러-10만/2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살기좋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프로젝트</li> <li>·대상 : 참여예술,문화기획,디자인프로젝트(최대20만달러) 및 창의적 공간구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최대10만달러) 등</li> </ul>
Research	투트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예술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지원</li> <li>·트랙1 가치와 영향에 대한 연구 : 1만달러-3만달러</li> <li>·트랙2 실험 및 준실험 설계연구 : 3만달러-10만달러</li> </ul>

자료출처: 「Grants for Organizations」, 『Grants』, NEA 홈페이지 (<https://www.arts.gov/grants/apply-grant/grants-organizations>)

### 3) 국가인문기금(NEH)의 미디어 프로젝트 지원

NEH는 1965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 미국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인문 관련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펀딩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박물관과 아카이브, 도서관과 대학교, 공영TV와 라디오 방송국이나 학자들에게 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 기관은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여자를 결정한다.<sup>7</sup> 이들은 교육프로그램, 문화재보존, 공공프로그램, 리서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공공프로그램 카테고리의 미디어프로젝트를 통해 영화와 라디오, TV 프로젝트의 개발 및 제작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NEH의 특성상 이들 미디어 프로젝트에서는 인문학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프로젝트(영화, TV, 라디오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수여한다. 특히 미국밖 세계의 각기 다른 나라와 문화를 탐색하며 미국인들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끄는 인문학적 미디어 프로젝트를 장려한다.<sup>8</sup> NEH 지원금 지원작들은 반드시 인문학 전공 학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하며 지원금 수상작품은 작품이 완성되면 극장 및 TV, 온라인 방영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 배급관련 계약은 NEH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지원금 수상작은 수상후 7년간 수익을 NEH에 배분(제작비 대비 지원금 비율)해야 하며 저작권은 수상자가 가져가지만 NEH는 연방정부를 위한 목적일 경우 작품을 별도로 열티 없이 사용할 권한도 갖는다.<sup>9</sup>

[표 3] NEH의 미디어 프로젝트 지원금 규모 및 대상

구분	지원금 규모	지원요건
개발 지원금	4만-7만5천달러	인문학적 주제를 선정, 학계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고 조언을 구해야 하며 개발단계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미디어팀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대중들에게 어필할 방법과 전달할 주제를 고려하고 프로젝트의 포맷을 결정해야 하며 관련 리소스를 밝혀야 한다
제작 지원금	10만-65만달러 (NEH회장 특별수여금 최대 1백만달러)	주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프로젝트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프로젝트의 스크립트나 자세한 트리트먼트를 완성하여 갖고 있어야 하고 배급과 상영, 파트너십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Media Project:Development Grants 및 Production Grants, Grants>Public, NEH 홈페이지

<sup>7</sup> About NEH, NEH 홈페이지 (<https://www.arts.gov/about-nea>)

<sup>8</sup> Media Project : Development and Production Grants FAQ, Division of Public Programs, NEH 홈페이지 (<https://www.neh.gov/files/grants/media-projects-faqs-aug-2016.pdf>)

<sup>9</sup> Media Project: Development Grants program guidelines, NEH 홈페이지 (<https://www.neh.gov/files/grants/media-projects-development-aug-10-2016.pdf>)

### 3. 뉴욕주의 인디영화 지원정책

뉴욕주에서는 주지사 직속으로 영화 및 TV 개발 사무소(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를 두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영화 관련 지원정책 중에는 뉴욕주에서 영화제작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일정부분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금공제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뉴욕주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금공제대상이 되는 영화의 범위에는, 장편영화와 TV용 영화 및 상업광고, 다큐멘터리영화와 단편영화, 이외 기타 유사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이 모두 포함된다. 이외에도 뉴욕주 내의 사운드 스테이지(soundstage) 안내 및 연결, 로케이션 장소 스카우팅 서비스, 촬영허가 지원 등을 부가적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들은 인디영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작비 규모가 작은 영화들은 규정이 좀 더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

#### 1) 세금공제 프로그램

뉴욕주는 영화 세금공제 프로그램(Film Tax Credit Program)에 매년 4.2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해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영화제작 세금공제에 사용된다. 최근 후반작업 세액공제 관련 예산이 늘어나서 2015년 기준 2500만 달러가 배정된 바 있고 표 4의 기타공제 항목에 배정된 예산은 최대 500만 달러다.

[표 4] 뉴욕주의 영화 및 TV 드라마 관련 세금공제 프로그램

종류	해당프로덕션	세제혜택
영화제작 세액공제	장편영화, TV 시리즈(파일럿 포함), TV용 영화를 뉴욕주 내에서 일정부 분 이상 제작시 제작비 일부환급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구역 내 : 제작비 30% 환급 뉴욕주 허드슨강 일부지역 : 제작비 30% 환급 뉴욕주 기타 지역 : 제작비 40% 환급
후반작업 세액공제	장편영화, TV 시리즈(파일럿 포함), TV용 영화를 뉴욕주 밖에서 촬영하 고 뉴욕주 내의 후반작업 업체와 계 약하여 작업할 경우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구역 내 : 후반작업비 30% 환급 뉴욕주 허드슨강 일부지역 : 후반작업비 35% 환급 뉴욕주 기타 지역 : 후반작업비 45% 환급
기타공제	뉴욕주 일부 카운티(알바니, 이리, 나 이아가라 등 42개 카운티), 2015-2019년 사이 제작비 50만 달 러 이상 지출 프로덕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인건비에 대해 추가로 10%의 세액 공제

자료출처: 「Film Production Credit」, 「Tax Incentives」, New York State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http://www.nylovesfilm.com/tax-incentives.php>)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작비 및 촬영관련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뉴욕주에서 지정한 지정제작시설(QPF)에서의 촬영일수가 제작비 인정요건의 기준이 된다. 즉, 영화제작 예산 중 BTL 항목 (Below-The-Line, 세트 제작, 촬영스탭인건비, 카메라 장비, 그립

장비, 소품 등에 사용되는 제작비)의 일정 부분을 뉴욕주의 설비와 기자재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작할 경우 해당 제작비를 세금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후반작업비의 경우 편집, 사운드 디자인 및 사운드 이펙트, 비주얼 이펙트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표 5] 뉴욕주의 영화 및 TV 제작비 세금공제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제작비 1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상장회사가 제작사 지분의 5%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촬영일수의 10% 이상을 뉴욕주의 지정제작시설(QPF)에서 촬영해야 함
제작비 1500만 달러 이하고 개인이 소유한 제작사에 서 제작한 영화의 경우	촬영일수 중 하루 이상을 QPF에서 촬영해야 함
QPF에서 촬영하지 않더라도 제작비의 75% 이상을 QPF에서 지출해야 함 - QPF 지출 비용이 3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 로케이션 일수의 75% 이상을 뉴욕주에서 촬영해야 함 - QPF 지출 비용이 3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75% 촬영일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자료출처: 「Post Production Credit」, 「Tax Incentives」, New York State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http://www.nylovesfilm.com/tax-incentives.php>)

[표 6] 뉴욕주의 영화 및 TV 후반작업비 세금공제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비주얼 이펙트 및 애니메이션	뉴욕주 지정 후반작업 업체에서 지출한 VFX/애니메이션 관련 비용이 - 총 VFX/애니메이션 비용의 20% 이상이거나 -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
후반작업	뉴욕주 지정 후반작업 업체에서 지출한 후반작업비용(VFX/애니메이션 비용 제외)이 전체 후반작업 비용의 75% 이상인 경우

자료출처: 「Post Production Credit」, 「Tax Incentives」, New York State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http://www.nylovesfilm.com/tax-incentives.php>)

## 2) 사운드 스테이지

뉴욕주에서는 영화촬영시설인 사운드스테이지를 지정하여 해당 시설에서 촬영한 제작비에 한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 사운드 스테이지는 규모와 시설에 따라 뉴욕시의 level 1, level 2 시설로 나뉜다. 뉴욕주는 일정규모와 시설을 갖춘 사운드 스테이지에 한해 지정 촬영시설로 인정해주고 있다. 뉴욕시 외부의 사운드 스테이지는 이러한 규모/시설에 따른 구분이 없다.

[표 7] 뉴욕주 사운드스테이지 구분

구분	시설요건	해당프로덕션
Level 1	7천 평방피트 이상의 규모	제작비 1500만 달러 이하이며 상장사의 제작사 지분 소유비율(직접/간접)이 5% 이하인 경우
Level 2	7천 평방피트 이상의 규모에 영구적인 배관시설을 갖추고 16피트 이상의 높이에 기둥이 없는 구조에 일정기준에 맞는 방음시설을 갖추고 촬영에 충분한, 별도 보완 장비가 필요없는 기본적인 난방/냉방 시설과 기본 전기공급시설을 갖춘 공간	제작비 1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제작사 지분 5% 이상을 상장사가 직접/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자료출처: 「Post Production Credit」, 『Tax Incentives』, New York State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http://www.nylovesfilm.com/tax-incentives.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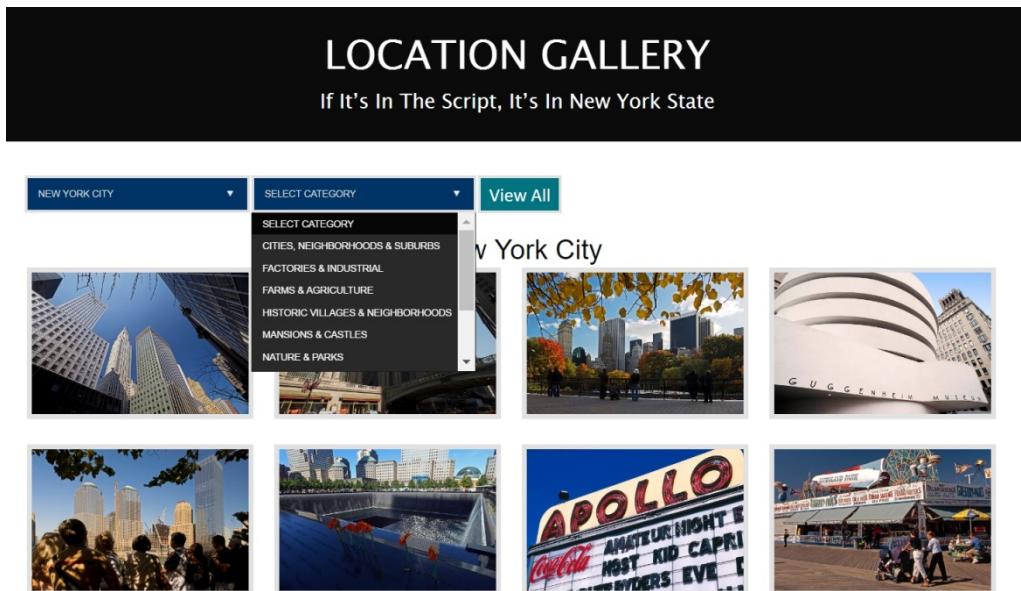
### 3) 로케이션 스카우팅 서비스

영화 컨셉에 맞는 촬영 장소를 구하려는 로케이션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뉴욕주는 다양한 지역의 사진을 갖춘 갤러리를 그림1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로케이션 부서의 직원은 로케이션 조사에 관한 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주 내의 각 지역 영화사무소들과 연계하여 로케이션 관련 질의사항들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로케이션 담당자들이 원하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돋고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 소유의 시설(고속도로, 국립 및 주립공원, 교정시설, 항공관제시설 등)과 각종 공립 및 민간 기구와 시설들에 대해 촬영허가를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뉴욕주 내에는 뉴욕시를 비롯하여 권역별로 16개의 영화사무소가 있다. 이를 영화사무소 직원들은 각종 영화제와 컨퍼런스를 다니며 해당지역을 홍보하고 프로젝트 유치가 성사되면 촬영팀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각종허가부터 호텔공간 및 촬영소품 확보 등-을 지원한다. 버팔로-나이아가라 지역에서는 1983년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영화 <내추럴>을 촬영한 뒤 당시 시장인 지미 그리핀이 버팔로-나이아가라 영화사무소를 세웠고 현재 이 사무소는 버팔로시와 이리 카운티, 나이아가라 관광 및 컨벤션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중소규모 프로덕션들에게 인기있는 이 지역에서는 2014년 이탈리아 감독인 루카스 파베토의 <The Alcoholic>와 아일랜드 배우인 사라 볼저가 출연한 심리스릴러 <Emelie>를 촬영한 바 있다.<sup>10</sup>

<sup>10</sup> Putting Buffalo on the Big Screen, Matthew Biddle, Buffalo Spree, 2015년 4월호 103페이지

[그림 1] 뉴욕주 영화&amp;TV 개발사무소 로케이션 갤러리



자료출처: 「Location Gallery」, New York State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http://www.nylovesfilm.com/location-library-details.php?gid=9>)

#### 4. 캘리포니아주의 인디영화 지원정책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정부 아래 영상위원회(film commission)를 두고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발간한 <Attracting Film Production>에 의하면,<sup>11</sup>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2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주들 및 캐나다 등에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영화프로덕션들이 캘리포니아를 빠져나가자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화제작팀이 주요 배우와 스탭들만 데려오고 나머지 스탭들은 해당지역에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자동차 렌트, 드라이클리닝 등의 수요가 많고 임금지급을 위해 지역은행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영화제작팀을 유치하면 지역의 주유소, 목재소, 장비대여소, 통신장비업체, 철물점 등등 수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장편영화 하나가 로케이션 촬영을 한번 할 경우 배우와 스탭들이 2-6주 혹은 그 이상 머무르며 하루 평균 5만달러 이상을 지출한다고 알려져 있다.<sup>12</sup>

캘리포니아 영상위원회에서도 영화 및 TV 프로덕션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주요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 온라인 촬영허가서비스,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 등을 기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디영화를 상장회사가 25% 이하의

<sup>11</sup> Introduction : What is film development?, Attracting Film Production, Community Filming Info, California Film Commission, 2012년 5월 (<http://www.film.ca.gov/Default.htm>)

<sup>12</sup> 위 자료 재인용

지분을 가진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로 한정하며, 75분 이상의 장편영화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1) 세금공제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주 영상위원회에서는 지역내 제작된 영화의 지출비용에 대해 20-25%까지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중 캘리포니아를 빠져나간 프로덕션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로케이션을 다시 캘리포니아로 변경하는 프로덕션들에게는 25%의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인디영화의 경우에는 일반영화들보다 5% 더 높은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일부 세금공제혜택은 다른 프로덕션으로 이전(판매)이 가능하다. 한 프로덕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혜택은 25%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표 8] 캘리포니아주 세금공제 프로그램

종류	해당프로덕션	조건
25% 세금공제 (이전 불가)	로케이션을 다시 캘리포니아로 변경하는 (relocation) TV 시리즈로 최소 6개 에피소드 이상을 캘리포니아주 외에서 촬영했던 작품	첫 시즌 촬영후 공제혜택 20%로 축소
25% 세금공제 (이전 가능)	제작비 최소 1백만 달러 이상의 인디영화	세금공제혜택은 최초 1천만 달러까지.
20% 세금공제 (이전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비 최소 1백만 달러 이상의 장편영화</li> <li>· 제작비 50만 달러 이상의 미니시리즈</li> <li>· 에피소드당 제작비 1백만달러 이상의 신규 TV 시리즈 (에피소드당 40분 이상)</li> <li>· 제작비 1백만 달러 이상의 TV 파일럿(에피소드당 40분 이상)</li> </ul>	장편영화의 경우 세금공제혜택은 최초 1억달러까지
5% 추가 세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세금공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다음의 경우 추가 5% 공제혜택 수령가능</li> <li>· 스튜디오존(LA지역) 30마일 밖에서 촬영시 인건비 및 물품대여/구매비용</li> <li>· 음악가의 작곡이나 녹음작업</li> <li>· 캘리포니아에서 지출한 VFX비용이 최소 1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VFX예산의 75% 이상을 캘리포니아에서 지출할 경우</li> </ul>	

자료출처: 「California Film & TV Tax Credit Program 2.0」, California Film Commission (<http://www.film.ca.gov/>)

## 2) 온라인 촬영허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립시설에서의 촬영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립시설에서 촬영을 원하는 팀은 4일전/96시간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도로나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촬영하려면 12-16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촬영팀은 허가를 받기전에 관련된 시설에서 부과하는 각종 모니터 비용 및 관리비용 등을 완납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sup>13</sup>

## 3) 로케이션 및 기타 영화촬영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캘리포니아 영상위원회에서는 시네마스카우트(Cinemascout)라는 이름으로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호텔, 관공서, 극장, 바 등 원하는 촬영장소와 로케이션 위치, 건축양식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스튜디오 및 사운드 스테이지 데이터베이스 등도 갖추어 놓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지역별로 60개의 영화사무소가 있다. 이 중 샌프란시스코 영화사무소 (Film SF)는 샌프란시스코 시장 직속의 경제 및 고용개발사무소(Mayor's Office of Economic & Workforce Development)의 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sup>14</sup> 이들은 제작비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프로덕션을 지원하지만 50만 달러 이하의 저예산 프로덕션이나 학생작품에는 촬영허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준다.<sup>15</sup> 또한 제작비 환급 프로그램(Rebate Program)을 운영중인데, 제작비 환급혜택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300만 달러 미만 저예산 프로덕션은 샌프란시스코 촬영일수 기준을 전체의 55%로 적용해주고 있다. 300만 달러 이상 프로덕션은 전체 촬영일수의 65% 이상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촬영해야 제작비 환급 자격이 주어진다. 프로덕션이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시에 지불한 각종 수수료(시의 자산과 장비, 인력을 구매하거나 대여하고 지불한 금액, 샌프란시스코의 항만, 대중교통, 경찰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지출한 금액 포함), 샌프란시스코 영화위원회의 수수료 및 해당지역에서 지출한 인건비 관련 세금 등이 있다. 환급액 상한선은 프로덕션당 최대 60만 달러까지다.<sup>16</sup>

<sup>13</sup> State Film Permits, California film commission (<http://www.film.ca.gov/Permits.htm>)

<sup>14</sup> About Us, Film SF 홈페이지 (<http://filmsf.org/about-us>)

<sup>15</sup> Get a Permit>Fees, Film SF 홈페이지 (<http://filmsf.org/fees>)

<sup>16</sup> Incentives>Scene in San Francisco Rebate Program, Film SF 홈페이지 (<http://filmsf.org/scene-san-francisco-rebate-program>)

## 5. 나오는 말

미국의 인디영화에 대한 공적 지원은 크게 연방정부의 기금과 각 주정부의 세제혜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작은 영화들이 제작되어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종 공적 기금을 통해 인디영화의 개발, 제작과 상영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에서는 대개 메이저-인디영화 구분없이 해당주에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부문의 지원에 힘입어, 인디영화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대담한 목소리와 독창적인 시각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는 미국 영화계의 자산이 되고 있다.